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8. 3. 3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3. 31
- 라. 上程日字 : 1998. 4. 9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總務課長 朴相龍)

가. 提案理由

- 통합방위법이 '97.1.13일 제정되어 '97.6.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산시 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主要骨子

- 방위협의회 위원은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
- 협의회 심의 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지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함(안 제3조).
- 시.읍.면.동에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둠(안 제7조).

-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됨(안 제7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 본 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 | |
|-------|--------------------|
| 제안번호 | 제 181 호 |
| 의결년월일 | 1998. . . (제 회) |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제출년월일 | 1998. 3. 31. |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
|----|-----|
| 의안 | 181 |
|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8.3.31

제 출 자 : 서산시장

□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이 '97. 1.13일 제정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산시 방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골자

- 가. 방위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시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협의회 심의 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지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함(안제3조).
- 다. 시, 읍.민.동에 통합 방위 지원분부를 둠(안제 7조).
- 라. 시지원분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민.동 지원 본부장은 읍.민 동장이 됨(안제7조).

□ 참고 사항(관련법 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

-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여 시.군.구 통합방위 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된다.
- 시군구 방위 협의회에서 심의 사항은 통합 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 대책

○ 통합방위 법 제9조

-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여 통합방위지원분부를 둔다.
- 지원본부에서는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상황실의 설치 운영, 국가 방위 요소의 육성 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계 확립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의(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및 시·읍·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지역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지역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의장
2. 1789부대 1대대장
3. 국군 기무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5.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또는 검사
6. 서산경찰서장
7. 서산교육장
8.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심리진담당간사 : 문화공보담당관

제3조(지역협의회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지역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직무등) ①의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지역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지역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원본부의설치및운영) ①시장 소속하에 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지원본부” 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지원본부” 라 한다)를 둔다.
② 시지원본부 및 각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운영한다.

1. 시지원본부

- 가. 시지원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본부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기획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마. 기타 시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본부장이 정한다

2. 각지원본부

- 가. 각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이하 “각지원본부장” 이라 한다)읍·면·동장이 된다
-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사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7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지원 본부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인차 계획

나. 통합 방위작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임목

나. 모래벙키 또는 언뚫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 실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